

N · E · W · S · P · L · A · Z · A

# 해외 경쟁정책 동향

본협회 조사부

EU편

## EU, 오스트리아 소매업체 매각 인가

유럽위원회는 8월 29일, 독일의 대형 식품 소매업체인 Rewe사에 의한 오스트리아의 최대 소매업체인 Billa사의 취득을 인가했다.

유럽위원회는 동 기업결합은 시장점유율의 증가로 이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거래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Billa사는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으며 Rewe 사도 과거에 오스트리아에서 사업을 벌인 적이 없다. 또한 당해 거래의 결과 오스트리아에서 Billa사가 지

배적 지위를 차지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유럽위원회는 밝혔는데, 동사는 오스트리아의 제2의 소매체인점인 Spar그룹으로부터의 강력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유럽위원회는 이 기업결합 때문에 Billa사는 Rewe사와의 공동구매를 할 수 있게 되어 동사의 경쟁적 지위는 향상될 것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Billa사가 더 나은 구매조건을 이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는데, 동 그룹은 오스트리아 시장에서 상표에 대한 그 지역 소비자들의 습관과 선호에 잘 부응하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유럽위원회는 당해 거래는 "구매력의 증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심각한 경쟁상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지만 앞으로 소매부문

에서 발생할 더 이상의 집중은 감시할 계획이며, 특히 이로 인해 구매력의 증가를 보이는 분야를 감시할 것이라고 하였다.

Rewe사는 작년엔 480억 마르크(322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Billa사에 10억 마르크 이상을 지불하였다고 추정된다. Billa사는 작년 70억 마르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1,600개소의 지점을 두고 있다.

당해 기업결합은 독일 외의 시장을 찾고자 하는 Rewe사의 필요를 반영하고 있는데, 독일의 소매시장, 특히 식료품 부문의 소매시장은 포화상태이다. 오스트리아는 최근 몇 달 동안 Horbach and Asko사와 같은 독일 소매업자들의 첫 번째 진출 대상이 되어 왔다.

Billa사는 오스트리아의 최대 소매업체로서, 28%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동 그룹

은 또한 헝가리, 폴란드 및 체코에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8/30, 1996, Financial Times)

### 유럽위원회의 기업결합 관련계획 비난받아

영국 및 독일의 경쟁당국 의 장들은 10월 22일 유럽위원회가 유럽의 기업결합을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증대시키려는 제안을 공격했다.

영국의 공정거래청 장관인 John Bridgeman은 1989년 유럽 기업결합 규정상의 회사 매출액 기준을 낮추는 제안은 "기업결합 통제를 위한 브뤼셀로의 중앙집권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하였다. 동 위원회는 관련기업의 전세계 매출액 기준을 50억 Ecu(62억 달러)에서 30억 Ecu로 낮추며, EU 매출액 기준을 2억5천만 Ecu에서 1억 5천만 Ecu로 낮추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Bridgeman은 베를린에서 개최된 국제법률가협회 회의에서 이러한 제안은 유럽위원회가 심사하는 기업결합의 수를 배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동 위원회의 기업결합 담당인력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며 유럽연

합 내에서의 "일괄적" 기업결합 심사의 원활한 진행에 위협을 줄 것이라는 것이었다.

독일의 연방카르텔청장인 Dieter Wolf도 "기준의 인하는 각국 경쟁당국과 유럽위원회간의 최적의 사건 배분이라는 목적을 좌절시킬 것이다"라고 하였다. 유럽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수는 1993년의 59건에서 1995년에는 113건으로 늘었으며 1996년에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실제 성장 및 통화의 변동으로 인해 실제적인 기준의 인하가 이루어졌다고 그는 밝혔다.

두 사람은 또한 가격 고정 및 시장분할 카르텔의 규제 책임을 각국 경쟁당국에게 환원시킴으로써 경쟁법 집행의 분권화를 이루려는 유럽위원회의 제안에 대하여서도 비판적이었다.

Bridgeman은 당해 제안은 더 많은 기업결합 사건을 유럽 위원회에서 다루려는 계획과 조화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접근방법의 차이는 유럽위원회의 기업결합 규제 행정은 유럽 업계에서 존중받고 있지만 반경쟁적 협정에 대한 규제행정은 덜 성공적이었다고 간주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10/23, 1996, Financial Times)

### 구주위원회, 심사활동에 협력한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금의 감면제도 도입을 결정

구주위원회는 점점 더 교묘해지는 카르텔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반·밀트위원(경쟁정책 담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구주위원회에 카르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제재금을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당해 감면조치에는 3가지 경우가 있다.

1.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구주위원회의 심사개시전에 정보제공을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제재금의 75%에서 전액까지 면제한다.

① 카르텔의 존재를 나타내는 중요증거의 최초제공자일 것

② 카르텔에 관한 정보제공 이후에는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있을 것

③ 당해 카르텔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구주위원회에 제공하고 심사과정을 통하여 계속적이고 전면적으로 협력할 것

④ 당해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를 카르텔에 강제적으로 참가시키던가, 카르텔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을 것

2.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구주위원회의 심사개시 후

에 정보제공을 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금의 50%에서 75%까지 면제한다.

3.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라도 구주 위원회의 심사에 협력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재금의 10%에서 50%까지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위의 제재금 감면조치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하는 구주위원회의 판단은 당해 위반행위의 처분이 결정된 후에 행하여진다.

또 이번의 제재금 감면조치는 종업원 개인에 의한 정보제공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사업자로서의 자발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7/10, 1996, 구주신문)

## 일본편

### 공취위, 진입규제 철폐 등 요청

공정취인위원회는 17일, 독점금지간담회(위원장의 사적 간담회)를 열어 독금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회원들로부터는 「가격규제를

재검토하는 것보다 진입규제를 철폐하여 가격저하를 촉진하는 쪽이 바람직하다», 「독금법의 적용제외카르텔의 근본적 재검토를 진행하여야 한다」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잇달았다. 내향해운, 농협에의 보호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1997년은 독금법제정 50주년이 되므로, 회원들로부터 「법제도 및 운용을 대폭적으로 재검토할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이 나왔다. 중국 및 동남아시아에의 일본기업의 진출 증가와 관련, 「문제가 생기기 전에 경쟁정책의 정비에 협력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저작물의 재판매가격유지제도의 재검토에 대하여서는 「논점을 정리하여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형태로 논의를 깊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10/18, 1996, 일본경제신문)

### 공취위, 신오지 사, 혼슈 사의 출자 인하 요청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10월 1일부로 합병하는 신오지 제지

와 혼슈 제지에 대하여 기업결합의 조건으로서 종이 유통업 최대 기업인 일본지 펄프 상사, 2위인 大永紙 통상에의 출자비율을 낮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임원파견의 중지도 요청하고 있다. 두 회사의 취급량에서 차지하는 기업결합회사분의 비율이 각기 절반 가까이까지 높아져, 유통지배를 통하여 가격유지 등 공정경쟁을 방해할 우려가 제기된다고 판단하였다.

공취위는 제2위의 주주인 일본제지와 같은 정도까지 낮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양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조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수년 걸려 은행 및 생명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분을 매각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번 달 중에라도 공취위에 대하여 정식 기업결합 승인절차를 밟을 것이다.

종이의 대부분은 제조업체로부터 대리점(1차 도매)을 경유하여 판매된다.

일본지 펄프 상사, 大永 사는 큐오지 제지 계열 제조업체인 신오지 사, 혼슈 사와 일본제지의 주력대리점이다.

10월에 발족할 오지 제지의 출자비율은 일본지 펄프 상사에 대하여 21.7%, 大永 사에 대하

여 34.1%로서, 2위인 일본제지의 출자비율(각 10.7%, 14.3%)의 약 2배가 된다.

신오지 제지는 양지, 혼슈 제지는 판지를 각각 주력으로 하고있어 생산품목이 겹치지 않는다. 기업결합 후의 생산량 점유율은 95년의 실적으로 양지가 24%, 판지가 12.8%로써, 품목별로 보아도 공취위가 심사의 목표로 하고 있는 25%를 상회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일본지 펄프 상사, 大永 사는 합치면 약 3조 엔이라고 할 수 있는 종이 시장 중 약 2할을 취급하게 된다. 그 중 2개 사의 오지 사 제품의 취급비율은 전부 절반 가까이에 달하여, 일본제지(전부 약 20%)를 크게 앞선다.

유통업자에의 출자비율에 대하여서는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에서는 수치기준은 없으나, 공취위는 이번의 기업결합으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한편 신오지 제지와 혼슈 제지는 10월 1일의 기업결합에 수반하여 생산량 점유율이 30%를 초과하는 중급인쇄용지에 대하여 小牧공장(홋카이도)의 일부 설비를 다른 품목의 생산으로 전환하여 점유율을 인한다.

공정취인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의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있는 25%를 대폭으로 상회하기 때문에, 공취위로부터 합병의 조건으로서 인하를 요청받았다. 종이 유통업자에의 출자비율 인하에 대하여서도 요청을 수락하고 있는데, 일본 최대의 종합제지 제조업체로 되어 시장지배력이 높아질 양사에 대하여 공취위가 엄격한 자세를 보인 결과이다.

중급제지용지는 서적, 잡지 및 시간표, 전화번호부 등에 사용된다. 심사의 기준으로 된 94년도의 일본내 총생산량은 약 117만 톤으로써, 점유율은 혼슈 제지가 23.2%로 수위이다.

일본 제지, 大昭和 제지 등이 다음으로 신오지 제지가 10.2%로 5위이다. 양사를 합치면 생산량 약 39만 톤, 점유율 33.4%가 된다.

(8/14, 15, 1996, 일본경제신문)

### 코닥 사, 공취위에 제소 - 필름유통 개선 추구

미국의 이스트만 코닥 사는 7일,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에 대하여 일본 국내의 사진필름과 인화지시장에서 반경쟁적 행위가 있다고 하여 개선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코닥 사는 전부터 후지 사진필름 등 일본 필름업계의 상관행이 일본 독점금지법에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 이를 받아들여 미국정부가 7월에 일본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상태이다.

코닥 사의 신청은 독금법 제 45조에 기한 조치청구로서, 공정취인위원회는 문서로 제출된 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의무를 진다. 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코닥 사는 「일본의 사진용 필름·인화지 시장에 존재하는 특정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법집행조치」의 개선요청이라고 하고 있으나, 상세한 내용은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본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특정의 상관행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였다」고만 언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동사는 후지 필름의 리베이트 제도 및 판매특약점에 대한 예치보증금 등을 유통지배의 근거로서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이 경쟁제한적이라고 하여 개선을 구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사진 도매 관련 업체단체도 신청의 대상으로 하였다.

코닥 사는 일본의 일반사진시장에의 접근이 저해되었다고 하여 작년 5월 미 통상법 301조(무역상대국·지역의 불공정거래관행에 대한 보복) 제소를 하였다. 일부는 WTO 분쟁처리절차에 들어가 있고 이번의 공취위예의 청구도 그 일환이다.

후지 필름은 이번의 신청에 대하여 「코닥 측의 공표자료에는 후지 필름의 이름이 눈에 띄지 않아, 논평할 수 없다」(홍보담당)고 하고 있다.

(8/8, 1996, 일본경제신문)

## 미국편

### 미 법무부, SBC 사 및 US West 사의 기업결합 계획 승인

미법무부는 새로운 통신법에 의해 촉발된 대규모 기업결합 중 두 건을 승인하였으며, 한 건의 경우에만 조건을 붙였다. 그러나 현재 가장 큰 거래인 Bell Atlantic Corp.가 230억 달러로 Nynex Corp.를 취득하겠다는 계획은 반트러스트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은 한 문장으로 된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SBC Communication Inc.가 167억 달러로 Pacific Telesis Group을 취득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6개월간의 조사 결과 “반트러스트법을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당해 조사를 종료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들 회사들은 연방통신위원회(FCC) 및 캘리포니아 규제당국의 승인도 필요로 하는데 전자의 경우는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나, 후자의 경우는 예측하기 힘들다.

법무부는 또한 US West Inc.가 53억 달러로 Continental Cablevision Inc.를 취득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US West 사는 보스턴에 기반을 둔 Continental 사가 전화 서비스 마케팅회사인 Teleport Communications Group Inc.에 대하여 갖고 있는 11% 지분을 매각한다는 조건으로 이를 허용하였다. 법무부는 콜로라도 주 Englewood에 소재한 US West 사가 네 주요도시에서 사업자용 전화 서비스에 관하여 뉴욕에 기반을 둔 Teleport 사와 경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해 결합은 그러한 경쟁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법무부는 말하였다. FCC는 이미 당해 거래를 승인하였으며, 단지 US

West 사가 지역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영역에 있는 Continental 사의 유선 시스템을 매각한다는 조건이 첨부되었다.

이들 두 거래는 비교적 쉽게 승인이 되었지만, 정부 조사에 정통한 사람들은 반트러스트 집행당국은 Bell Atlantic-Nynex 기업결합의 잠재적 반경쟁적 영향에 대하여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Bell Atlantic 사와 Nynex 사는 그 영역이 인접해 있으며 각각의 지역에서의 지역 전화 서비스에 대한 상호 경쟁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법무부 조사관들은 샌안토니오에 소재한 SBC 사와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PacTel 사는 만일 결합되지 않는다면 상호 영역에 대하여 진지한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의 영역은 지나치게 떨어져 있으며 인구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Bell Atlantic 사와 Nynex 사의 지역은 인접해 있으며 인구가 많은 곳으로서, 이들 기업이 결합될 경우 경쟁관계가 존속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무도 정부가 당해 기업결합

을 봉쇄하거나 변경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법무부 조사관들과 대화를 가진 몇몇 반트러스트 변호사들은 법무부는 당해 거래가 “잠재적 경쟁”을 제거하게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였다. 장거리 전화 부문 거대기업인 AT & T Corp.와 MCI 사는 소비자단체와 연합하여 FCC에의 이의 제기에서 이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잠재적 경쟁의 법이론은 입증하기 어려우며 법원에서 성공한 적이 드물었다고 반트러스트 전문가들은 말하였다. Bell Atlantic사와 Nynex사는 당해 거래가 승인받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하였다.

(11/6, 1996, The Wall Street Journal)

### 마이크로소프트 사 인터넷 사업 반트러스트 조사 대상에

미국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하여 반트러스트 조사를 개시하였는데, 이 조사는 첨단 기술산업 중 가장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의 근본 규칙의 형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주 Redmond에 소재한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법무부가 최근 동 소프트웨어 회사에 대하여 자료 요청서를 발송할 것임을 알려 왔다고 밝혔다.

당해 조사는 인터넷 월드와이드웹 검색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시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고 있다.

당해 영역은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넷스케이프 사간의 분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데, 넷스케이프 사는 웹 브라우저 시장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달 법무부에 대하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웹 시장 마케팅 전략이 1994년 정부와의 동의 명령이나 반트러스트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넷스케이프 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인용 컴퓨터 제조업체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넷스케이프사의 프로그램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검색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은밀한” 인센티브와 벌칙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대변인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조사가 계속중이라는 것만 밝혔으며 그 이상은 논평을 거부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지난 달 넷스케이프사의 비난을 부인하였으며 19일 동 회사는 브라우저 사업에서 위법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동 회사는 법무부에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1990년 개시된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난 6년간 정부의 조사를 받아 왔다. 1990년의 당해 조사는 법무부로 이관되었으며, 1994년 7월 법무부는 컴퓨터 운영 체제 시장에서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동의 명령에 관한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또다른 법무부의 조사는 1995년 초에 개시되었으며 당해 조사는 원래 동 회사가 윈도우 95 운영체제에 지난 여름 사업을 개시한 온라인 서비스인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끼워 넣음으로써 컴퓨터 온라인 서비스업체들과 부당하게 경쟁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웹 브라우저 시장으로 관심을 돌리기로 한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마이크로소프트사 제소 결정을 내렸으며 1994년 화해안에 관한 협상을 벌였던 법무부 국장인 Anne Bingaman이

퇴직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반트러스트 집행에 관하여 적극적 자세를 견지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9/20, 1996, The Wall Street Journal)

## FTC, 기업결합 심사 촉진 결정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기업들이 기업결합 계획의 승인 여부에 관하여 몇 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 기업결합 및 취득에 대해 행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도입했다.

9월 18일 채택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 새로운 규칙은 또한 FTC가 반경쟁적 행위나 소비자 기만이 있다고 주장하여 행정 사건을 제기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의 단축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당해 기관의 행정 과정이 지나치게 장기이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불만을 해소하는 것과 당해 과정이 기업 및 개인이 연방 법원에서 직면하는 과정과 조화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러한 변화는 FTC의 기업결합 제안에 대한 초기 심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동 기관이 당해 거래가 반트러스트법 위반이라고 결정한 이후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이 경우 FTC는 전형적으로 연방법원에 대하여 동 기관이 반트러스트 이의제기를 진행중일 때에는 이러한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 만일 법원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도 FTC는 이의제기를 계속할 수 있으나, 자동적인 것은 아니다.

새로운 규칙 하에서 FTC 행정심판관들은 이의가 접수된 후 1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는 현재보다 훨씬 짧은 기간이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5인으로 구성된 FTC에 항소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FTC의 심사대상인 기업들이 소송에서 다툴 것인지 법원 외에서 화해할 것인지를 결정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결정에 몇 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에서 다투고자 할 것이다.

반면, 이러한 시한의 단축으로 인해 기업들은 법원의 기업결합 정지명령이 있는 상태에서 기업들이 부당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FTC 절차상 지연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

발표될 69페이지짜리 문서에서, FTC는 당해 변화로 인해 동 기관의 이의제기가 “공정하게, 그리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결될 것임”이 보장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몇몇 반트러스트 변호사들은 동 기관이 사건 처리에 3년 내지 5년의 시간이 걸리는 현 관행을 바꿀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FTC와 다투는 기업들은 힘든 여정에 직면할 수도 있다. Donnelly & Sons 사가 1990년 10월 Meredith/Burda Co.를 5억 3,650만 달러로 취득하려는 데에 대해 FTC가 이의를 제기한 이후, 행정심판관이 결정을 내린 것은 1994년 1월 이후였다. Donnelly 사는 항소하였으며 1995년 8월 FTC는 전원일치로 당해 거래가 반경쟁적이라는 주장을 배척했다.

기업결합 사건에서 기업들은 총 13개월 내의 최종결정을 보장하는 “신속(fast-track)” 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연방 법원에서 걸리는 시간보다 빠른 경로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FTC 경쟁국장인 William

Baer는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전문가들은 동 위원회의 조치가 충분한가에 의문을 제기했다. (9/18, 1996, The Wall Street Journal)

### 컨티넨탈 에어, 500만 달러에 소송 화해

미국 컨티넨탈 항공(Continental Airlines)는 미니애폴리스의 연방법원에 제기된 반트러스트 소송의 일환으로 제기된 미국 여행사들의 청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500만 달러를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컨티넨탈 사는 소송 진행시의 위협 및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당해 소송에서 화해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였다.

컨티넨탈 사는 당해 화해 이후에도 500달러 이하의 국내선 운임에 대하여 10%의 수수료를 받는 여행사들에 대하여 그 이상의 국내선 운임에 대한 50달러의 수수료 상한 지불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고 하였다. 국제 수수료는 당해 소송의 일부가 아니라고 컨티넨탈 사의 대변인은 밝혔다.

미국 내 33,000개 여행사를

대표한다고 하는 당해 집단소송은 컨티넨탈 사 및 6개 미국 항공사를 상대로 1995년 2월에 제기되었는데, 이는 항공사들이 국내선 편도 항공권에 대하여는 25달러로, 그리고 왕복 항공권에 대하여는 50달러로 수수료의 상한을 정한 이후 제기되었다.

이전에 운임의 10%를 수수료로 받았던 여행사들은 항공사들이 인위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상한을 정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항공사들은 그러한 주장을 부인하였다.

TWA 사는 작년에도 원고들과 화해하였다. 당해 사건에서 남아 있는 피고들은 American Airlines, Delta Air Lines, Northwest Airlines, United Air Lines 및 USAir Group Inc.이다.

(9/4, 1996, The Wall Street Journal)

### 미국 사법성, General Electric 사를 제소

- 의료용 화상장치의 수리에 대하여 수요자인 병원을 구속한 혐의

사법성은 8월 1일 의료용 영상기기 수리용 소프트웨어의 제한적 라이선스 계약을 하면서

동회사의 진단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원들에 대하여 영상기기 수리사업에 진출 못하도록 제약하는 것이 반트러스트법에 위반한다고 GE를 제소했다.

사법성은 GE가 제한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하면서 각 병원에 대하여 MRI나 CT scanner라고 하는 의료용 영상장치의 수리요금에 대하여 꽤 많은 가액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장치의 수리에 관하여 병원 등의 의료기관이 1년동안 지출하는 경비는 전미에서 연간 3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GE가 의료기관과의 사이에 체결하고 있는 라이선스 계약수는 500건 이상이 되고 있다.

몬타나주의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의하면 당해 계약은 GE를 포함한 몇가지 브랜드의 의료장치에 대한 수리공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의료장치의 수리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법성은 GE가 병원에 대하여 특정한 고품질의 수리용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주는 조건으로서 이러한 동의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다.

GE측은 이번의 제소를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는 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쟁송할 뜻을 표명하고 있다.

GE는 MRI나 CT scanner라고 하는 의료용 화상장치의 세계 최대 메이커이며 또 모든 유형·상표의 의료용장치의 수리공급에 대해서도 유력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사법성은 GE가 라이선스 계약에 있어서 다른 병원의 장치에 대한 수리를 금지할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만약 GE의 라이선스에 의한 제한이 없으면 그러한 병원은 다른 병원에 대하여 보다 값싸고 고품질의 수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사법성의 반트러스트국 차장은 GE가 고객인 병원에 대하여 수리분야에 있어서 자사와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는 「명백히 경쟁제한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트러스트의 지지자 중에는 마이크로 소프트사와 같이 대규모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문체가 될 수 있는 라이선스 행위야말로 소추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비판하는 자도 있으나, 이번의 제소는 급속히 진전하는 지적재산권에 관계되는 반트러스트법의 집행에 있어서의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GE는 본건 심사예의 대응으로서 금년 5월에 구속성을 약하게 하도록 라이선스 계약을 수정했으나, 당해 수정은 사법성을 만족시키는데 충분한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

숫장에서 사법성은 재판소에  
① GE는 라이선스 계약에 있어서 의료장치의 수리분야에서 동사와 경쟁이 되거나 동사의 경쟁업자인 메이커가 판매하는 장치에 대하여 수리를 행하지 않도록 병원에 요구하는 조항은 규정하지 말 것  
② GE는 병원에 대하여 부당하게 끌어 올린 요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수리계약의 체결을 강제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제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8/1, 1996, 미국 사법성 발표)

### 미국 사법성 IBM에 대한 1956년의 동의판결 실효에 합의

사법성은 지난 7월 2일 IBM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에 대하여 40년간에 걸쳐 동사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컴퓨터의 판매 및 서비스 제공 방법을 규제함

으로써 연간 1억불 이상의 추가적인 경비를 필요케한 동의 판결의 효력을 종료시키기 위하여 화해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의 화해는 뉴욕 맨하탄에 소재한 연방지방법판사의 Allen Schwartz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동 화해의 내용은 IBM의 지배적지위를 억제하고 당해산업에 있어 경쟁을 촉진토록 하는 획기적인 1956년의 동의판결 중 현재까지 효력이 계속되고 있는 조항을 향후 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이다.

Schwartz 판사는 당해 동의 판결의 일부조항에 대하여 이미 효력을 종료시키는 것을 승인한 바 있다.

지난 7월 2일 공표된 내용을 보면 동의 판결의 제한 조항 중 동사의 중견기종인 AS/400시리즈에 관계된 것은 4년간에 걸쳐 실효가 되고, IBM으로서 중요한 대형 컴퓨터(main-frame)와 관계되는 것은 5년 후에 실효가 되며 고객에의 컴퓨터 출하는 주문을 받은 순서대로 하여야 한다는 조항 등 일부 제한 조항은 즉시 실효가 된다.

· 상실된 대형 컴퓨터의 대상

IBM의 고문변호사인 Lawrence Ricciardi에 의하면 위에

서 언급한 제한조항 때문에 대당 100만불에 이르는 대형 컴퓨터를 고객이 지정한 납기에 납품할 수 없어 고객이 당해 대형 컴퓨터의 구입을 타사로 경정한 일이 있어 IBM은 연간 20대 분의 매상을 상실하여 왔다. 또한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동사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컴퓨터를 대여해 주어야만 했다.

5년간 잔존하는 다른 제한 조항 때문에 IBM은 컴퓨터를 대여하는데 경쟁사업자보다 가격이 높아 컴퓨터 시장에서의 동사 침입을 제한받게 된다.

이번의 화해에 관하여 과거 오랫동안 사법성과 교섭해 온 Ricciardi 변호사는 「이러한 제한 규정이 없어지면 당사는 현재와 다른 방법으로 경쟁을 할 수가 있다. 우리의 고객은 다른 경쟁사업자와 똑같이 당사와 거래할 게 틀림없다」라고 진술하였다.

· IBM은 거액의 비용 절약을 기대

Ricciardi 변호사는 다시 「동의 판결의 실효는 연간 수백만 불 또는 그 이상의 비용 절약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동의 판결의 전조항에 대한 즉각적인 실효를 바라고 있다. 사법성은 단계적으로 실효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IBM이 동의 판결

을 실효하기 위한 재판을 계속 하였다면 5년간보다 빠른 실효는 없었는지도 모른다」라고 언급하였다.

IBM은 동의심결의 실효신청을 1994년 6월에 하였다. 작년 1월 Schwartz 판사는 사법성의 동의를 얻어 파스콘, 워크스테이션 서비스 사업에 관한 제한 조항을 삭제하였다.

반트러스국의 David Turetsky차장은 성명문에서 사법성이 동의 판결의 일괄 실효보다는 단계적 실효로 결정한 것은 사업활동에 있어 중요한 결정을 당해 동의판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동의 판결이 종결하기전에 동결정을 수정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주기 위한 것이며 또한 「이번의 화해안은 IBM이 이미 당행사업을 지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등 컴퓨터 산업에 있어 경쟁조건의 변화를 반영시킨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 경쟁사업자의 반론

컴퓨터 대여회사와 중고 컴퓨터 판매회사는 동의 판결의 제한 조항을 실효시키기 위한 지 금까지의 IBM의 시도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였다.

그들은 뉴욕주 Armonk에 소재한 IBM이 대형 컴퓨터의

제조에 있어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동사가 컴퓨터 대여 및 중고 컴퓨터 판매시장에 있어 독점화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지난 7월 2일 The Computer Dealer and Lessee Association(CDLA)의 대리인 변호사는 이번의 화해를 환영하였다. Kevin Aroquit 변호사(뉴욕소재 Rogers & Wells 사무소 소속)은 「화해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나 IBM이 지배하는 대형 컴퓨터 시장에 있어 5년간의 보호가 계속되도록 되어 있어 CDLA 및 소비자로서는 실질적인 승리라고 생각된다」고 술화하였다.

1956년의 동의 판결은 컴퓨터 시대의 여명기에 이루어져 당시 IBM은 기업회계에 사용된 펀치카드의 기계를 제조하고 있었으며 동 시장도 지배하고 있었다. IBM은 당해기기의 고객에 대하여 판매하지 않고 대여계약에 대하여 고액의 요금을 일방적으로 부과하였다. 이 때문에 고객들로부터 불평을 사기도 하였다. 이러한 IBM의 잠재적인 독점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정부는 1960년대에 동사를 해산코저 제소한 적도 있으

나 동재판은 1982년에 중단되었다.

(7/2, 1996, 사법성 발표, 7/3, 1996, The Wall Street Journal)

### 미 법무부, 「아처 다니엘스 미드랜드, 사에 사상 최고 벌금 액인 1억불 동의판결에 합의

법무부는 지난 10월 15일 Archer Daniels Midland (ADM)(이리노이주 Decatur를 본거지로 한 농업관련 기업 그룹) 사의 가격담합 사건에 대하여 동의 판결키로 합의하였다고 공식 발표하였으며, 같은날 법무부 고위층은 동사의 임원 2명은 별도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의 Gray Spratling 차장은 동부가 ADM사의 Michael Andreas 부회장 및 Terrance Wilson 부사장(옥수수 정제유 사업부 담당) 2명에 관계되는 증거수집을 계속 중이라고 언급하였다.

ADM사는 같은 날 리징(사료 첨가제의 일종) 및 구연산에 관계되는 전세계에 걸친 가격담합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 반트러스트법과 관계되는 벌금으로서는 사상 최고액

인 1억불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동의하였다. 이번 합의의 대가로 동사는 상기 2개 품목 및 연간 판매규모인 30억불에 달하는 고당도 옥수수 시럽에 관계되는 소추를 면제받게 된다.

동사의 임원과 종업원은 이번의 합의에 따라 동사의 주력제품의 타사와의 관계에 대하여 심사받는데 협력할 책무를 지게 된다. 동사는 고당도 옥수수 시럽 시장의 고객에 의하여 제기되어 계류중인 민사소송에 대하여서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10/15, 10/16, 1996, 미법무부, Financial Times)

### 미 법무부 팩스용지 사건에서 일본 제지에 패소

보스톤 연방 지방재판소는 9월 3일 외국에서의 사업활동에 대한 법무부의 반트러스트법 적용이 정도를 넘어섰다 하여 법무부의 일본 팩스용지 메이커인 일본제지주식회사에 대한 형사 소추를 기각하기로 판결하였다.

법무부는 일본 국내에서 열린 (동업자간의) 회합에서 미국에 대한 수출용 팩스용지 가

격을 조작했다 하여 일본제지를 기소하였다. 그러나 보스톤 지방재판소의 Joseph Tauro 판사는 공모행위가 미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공모행위에 대하여 반트러스트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였다.

법무부 공보관은 법무부는 본건을 재검토하여 공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이외에 특별한 코멘트는 하지 않았다. 일본제지측의 변호사인 Alan Cohen(뉴욕주 O'melveny & Myers 법률사무소)는 이번의 판결을 찬양 본 판결로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트러스트법 위반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반트러스트국의 대응에 대하여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논평하였다.

일본제지측은 본건 재판에서 동사는 수출상사에 대하여 상기 용지를 판매한 것 뿐이며 미국에서 판매한 것은 당해 수출업자라고 주장하였다.

〈참고〉 판결의 개요

본건은 十條製紙(現 日本製紙)가 다른 일본기업과 일본 국내에서 공모하여 미국 및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팩스용지의 가격을 인상한 것이 「샤먼」법

기 타

위반으로 기소된 것으로서 보스톤 연방지방법관소는,

① 일본제지와 수출상사간의 수직적 공모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이상 일본제지의 행위는 수출용에 대하여 일본 국내에서 상사(三井物産 및 日本紙 펄프상사 등 2개사)에 판매한 시점에서 완결된 것이므로 공모에서 실행행위까지의 일련의 행위는 모두가 미국 밖에서 이루어진 것임.

② 지금까지의 반트러스트법 형사소송에서 외국 사업자만으로 외국에서 완결되는 행위에 대하여 유죄로 된 사례는 없음. 민사소송에서는 실질적 효과가 인정되면 반트러스트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적 재량이 허용되나 형사소송에서는 예견가능성과 공정성에 입각한 형사이론에 반함.

③ 이에 따라 본건 피고에게는 본건 행위가 가별적인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가령 본건을 유죄로 하는 경우에는 「적정수속의 보장」의 관점에서 문제가 큼. 이러한 이유로 법무부 패소(피고 무죄)의 판결을 내린 것임.

(9/12, 1996, The Wall Street Journal, 9/26, 1996, Antitrust & Trade Regulation Report)

프랑스 의회 경쟁법 개정안 가결

프랑스 의회는 1996년 6월 21일 「가격 및 경쟁에 관한 1986년 12월 6일의 명령 제86-1243호」(경쟁법)을 정비하기 위하여 독립계 주유소업자에 대해 최저 8% 마진을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개정법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법은 금년 2월 26일에 각 의에 제출된 원안에 거의 가까운 내용으로 성립되었다.

경쟁정책을 소관하는 Yves Galland, Junior 경제재정장관은 「홍사의 예언자 카산드라(법안의 행방에 부정적인 논자)는 의회에서 논의중인 법안이 극적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러나 나는 항상 그 예언과는 반대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믿어왔고 나의 예언이 옳았다는 것이 분명해 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그 법안을 심의한 의회위원회의 전 정당에게 말했다.

Galland 경제재정장관은 의회 양원이 지나친 과밀화로 고

민하는 농촌지역의 주유소를 보호코자 하였는데 「부당염매」에 관한 제1조 D항의 대상에서 휘발유가 제외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부안에서 변경된 사항은 농가가 공동브랜드를 도입함으로써 마케팅의 조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된 점과 경쟁평의회 정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증원하는 것, 그리고 「부당염매」에 관한 제1조 D항 위반시 동평의회에 제재권한을 부여하는 것 등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경제재정장관은 「최종법안은 정부안의 5개항에 비하여 대폭 증가된 20개항으로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이 법기술적인 조항으로서 경쟁법(1986년의 명령)의 개념을 명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개정법은 관보에 게재한 후 7월의 첫째주 마지막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경쟁평의회의 Frederic Jenny 부의장은 「최종안은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가 있었다. 경쟁평의회는 몇가지 점, 특히 저가격문제와 경제적인 종속성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한 의회의 심의가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정부원안을 수정할 것이라고는 예상하

지 않았으며 또한 이에 대하여 걱정을 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제1조 D항은 「약탈적 가격개념」과 거의 같은 것으로 되었다.」고 부언하였다.

이러한 의견에 찬동하지 않는 한 경쟁정책 전문가는 이번의 개정은 소비자보호 보다 중소기업자 보호를 우선한 것이며 경쟁촉진적이지는 않다고 평가하였다. 이 전문가에 따르면 최종안은 실질적으로 프랑스 경쟁정책의 촉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OECD가맹국 경쟁법의 기본원칙에 따른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이 전문가는 「Galland 경제재정장관이 결과를 감수한 것은 정부가 1995년의 대통령선거 캠페인중에 행한 중소기업자를 보호 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한다는 의미이며 「선거의 빛」을 짚는 것의 시작」과 같다고 언급하였다.

(※ 편집자 주 : 프랑스는 미국, 서독, 일본 등 다른 선진 국가에 비하여 경쟁법 도입이 크게 늦은 편이다. 그 이유는 산업정책이나 가격통제 등 「정부개입주의」에 대한 일반적 지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1980년(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임)을 전후하여 영국에서는 대처정권, 미국은 레이건 정권,

서독은 콜 정권이라는 보수정권의 성립으로 규제완화, 민영화 등 시장기구 존중의 정책노선을 취한 데 반하여 프랑스의 경우 사회당 정권에 의한 국유화정책이나 기업합병 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증대되어 제2차 미테랑 정권하에서는 「국유화추진」을 포기하였다. 또한 전후 자유시장경제, 경쟁질서를 지향한 서독에 비하여 프랑스 경제의 상대적 부진이 확연해짐에 따라 전통적인 「정부개입주의」를 포기하고 시장기구와 경쟁원리를 존중하는 정책노선으로 전환하면서 1977년에 제정된 경쟁법을 대폭 정비, 1986년에 현행 경쟁법을 제정하였으며 전통적인 가격통제를 철폐하기 위한 「가격령」의 폐기와 경쟁평의회와 신설, 합병규제의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6/27, 1996, Antitrust & Trade Regulation Report)

### 영국정부, 경쟁법 개정법안 발표

- 카르텔을 원칙 금지 -

영국정부는 지난 8월 8일 내년의 시행을 목표로 카르텔을 원칙금지하는 경쟁법의 개정법

안을 공표했다.

동법안은 가격구속, 시장분할 및 입찰담합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안에는 약탈적 가격설정에 의하여 경쟁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청 장관의 권한강화도 반영되어 있다.

반경쟁적인 협정에 참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상고의 10%를 상한으로 하는 최저 35만 파운드의 고액의 제재금이 부과되게 되나 초범인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제재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동법에 관한 개정은 1987년의 선거공약에서 처음으로 표명된 것이며 이 개정은 영국의 법제를 EU의 경쟁법에 접목시키는 것이다.

이번의 개정법안을 의회에 상정하는 이안 랭 통상산업부 장관은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경쟁은 필요불가결하다고 하고, 또한 「경쟁은 효과적인 경쟁법 시스템에 의해 지지되지 않으면 안된다. 현행의 경쟁법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명하였다.

이번 개정법안의 내용은 올해 3월에 공표된 자문문서에 매우 가까운 것으로 되어 있다. 반경쟁적 협정을 금지하는 조항의

도입이 포함되어 있던 동 문서에 대하여 상업단체 및 산업계에서 광범한 지지를 받았다. 그 결과 정부는 백서를 발표하지 않고 직접 법안을 작성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랭 장관은 이번의 법안은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현 시점에서 개정법안을 공표한 목적은 당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기업 및 소비자에 대하여 논평을 제출 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8/8, 1996, 영국정부발표, 8/9, Financial Times)

### 독일정부와 EC, 폴크스바겐 사 원조 관련 합의에 도달

폴크스바겐 사에 대한 국가 원조 지급금에 관하여 타협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독일 정부와 유럽위원회간의 전면적 충돌은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9월 4일 유럽위원회가 발표한 합의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이미 작센 주 당국이 폴크스바겐 사에게 지급한 9,070만 마르크에 상당하는 자금지원을 동결하도록 조치하였다.

유럽위원회 경쟁담당 위원인

Karel Van Miert는 당해 합의는 원조의 영향을 “중화”시킬 것이라고 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독일정부에 대하여 지급을 동결하라는 내용의 법원 명령 신청 계획을 철회하였다.

그러나 그는 동 위원회는 “당해 서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다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경고하였다. 동 위원회는 작센 주가 6월에 동 위원회가 일단 저지한 2억4,000만 마르크 지원 계획의 일부로서 폴크스바겐 사에 대하여 9,070만 마르크를 지급한 지난 7월 이후 독일정부와 대립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분쟁을 종식시킬 것 같지는 않다. 이 합의는 분쟁의 핵심이며 독일과 유럽위원회간의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영역 중의 하나, 즉 독일 연방정부가 구 동독을 보조할 수 있는 범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폴크스바겐 사와 독일정부는 이 합의는 일시적인 것이며 보조금에 대한 동 회사의 법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폴크스바겐 사는 연말 내로 동결된 보조금 지급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독일정부는 이미 유럽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원조 계획의 일

부로서 폴크스바겐 사에 대하여 약 1억2,000만 마르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었다. 이는 독일정부가 동결을 제안한 계획 중에 포함되어 있다.

폴크스바겐 사는 구 동독 영역에서의 두 사업계획, 즉 모젤 지방과 쾰비카우 지방의 기존 자동차 공장의 확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 회사는 만일 전적인 원조를 받지 못할 경우 투자를 철회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독일 경제성 장관인 Gnter Rexrodt는 당해 협정으로 인해 “우리는 합리적인 해결에 도달할 시간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Van Miert는 동 위원회는 당해 원조의 합법성에 관하여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해 금액 지불의 근거가 된 협정 조문은 적용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할 수 없다”고 그는 밝혔다.

독일은 구 동독에 대한 국가 원조는 EU 경쟁 규칙에서 적용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9/5, 1996, Financial Times)